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남인순 · 이주희
최혁진 · 김선민 · 김정호
이인영 · 정을호 · 전용기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응급실, 중환자실,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,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.

현행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이하 “노동조합법”이라 한다)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·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·운영을 정지·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정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「노동조합법」은 사용자 등 대상의 정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,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,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

이에, 「의료법」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

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·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,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)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·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이하 “필수유지 의료행위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·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
2. 중환자 치료·분만(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)·수술·투석 업무
3. 제1호와 제2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, 진단검사(영상검사를 포함한다)
4.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8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9조의2를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9조의2(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) 의</u> <u>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</u> <u>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</u> <u>우 환자의 생명·건강 또는 신</u> <u>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</u> <u>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</u> <u>해당하는 의료행위(이하 “필수</u> <u>유지 의료행위”라 한다)에 대</u> <u>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</u> <u>지·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</u> <u>를 할 수 없다.</u> <u>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</u> <u>업무</u> <u>2. 중환자 치료·분만(신생아</u> <u>간호를 포함한다)·수술·투</u> <u>석 업무</u> <u>3. 제1호와 제2호의 업무수행을</u> <u>지원하기 위한 마취, 진단검</u> <u>사(영상검사를 포함한다)</u> <u>4.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</u> <u>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</u>

제8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	<u>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</u> 제8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제59조의2를 위반한 자</u> 4. (현행과 같음)
--	--